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
조례안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문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,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성주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
○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

- 보조금의 지원근거(안 제6조) - 사업보조금의 용도(안 제7조)

○ 문화원 회계관리 책임 명시(안 제8조)

4.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문화원진흥법(별첨)

나. 참고사항

1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.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3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4.10.13 ~ 11. 3) 4) 예산조치(비용추계서 참조)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(안)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문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균형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코자 하며,

❍ 총 10조로 구성되었으며 성주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, 보조금의 지원 및 용도 회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

❍ 본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킴은 물론 지역문화의 육성·발전을 위한 조례 목적에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며,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